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. 3. 11 선고 2021가단11960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3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88,036,200원 및 그중 4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6. 9. 11.부터, 4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6. 9. 21.부터, 4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6. 10. 1.부터, 40,000,000원에 대하여는 2016. 10. 11.부터, 28,036,200원에 대하여는 2016. 10. 21.부터 각 2021. 12. 30.까지는 연 6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

판사 이훈재

별지